

2026년 예수마을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● 계약기간

- ▶ 본 원에서는 입소자의 계약기간은 입소 시부터 퇴소 시까지로 한다. (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)
- ▶ 예수마을노인요양원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(수급자 및 보호자)는 이후 15일 이내에 예수마을노인요양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
- ▶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인정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된다. (단, 시설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- ▶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- ▶ 이용자(수급자 및 보호자)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● 계약목적

- ▶ 본 시설은 입소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, 보호자는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증인과 연대하여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한다.

● 월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

- ▶ 보호자는 입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의 비용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(본인 일부부담금)에 의거 입소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른 요양보험수가의 20%(기타 의료수급권자,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, 저소득층 등의 기타 경감 대상자는 8% 또는 12%)와 비급여비용 식재료비 1일 8,600원의 금액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익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(단 매월 말 추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비급여 및 기타서비스 비용은 월말에 추가 정산한다.) 단,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의 경우 전액 무료이다.

▶ 별도 입소보증금은 없으며, 비급여비용 중 이미용, 상급병실이용료는 무료이다.

▶ 입소자나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받은 기타 개인적 또는 특정 서비스, 그리고 입소자의 시설 외의 치료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.

▶ 2026년 장기요양수가

구 분	1 등급	2 등급	3~5 등급
노인요양시설	93,070	86,340	81,540

▶ 2026년 월별 입소비용

구분	등급	장기요양 보험료	본인부담금 (20%/12%/8%)	비급여항목 (3식, 간식 3회)	합계
30일	1	2,792,100	(20%) 558,420	8,600*30일 =258,000	(20%)816,420
			(12%) 335,050		(12%)593,050
			(8%) 223,360		(8%)481,360
	2	2,590,200	(20%) 518,040	8,600*30일 =258,000	(20%)776,040
			(12%) 310,820		(12%)568,820
			(8%) 207,210		(8%)465,210
	3	2,446,200	(20%) 489,240	8,600*30일 =258,000	(20%)747,240
			(12%) 293,540		(12%)551,540
			(8%) 195,690		(8%)453,690

구분	등급	장기요양 보험료	본인부담금 (20%/12%/8%)	비급여항목 (3식, 간식 3회)	합계
31일	1	2,885,170	(20%) 577,030	8,600*31일 266,000	(20%)843,630
			(12%) 346,220		(12%)612,820
			(8%) 230,810		(8%)497,410
	2	2,676,540	(20%) 535,300	8,600*30일 266,000	(20%)801,900
			(12%) 321,180		(12%)587,780
			(8%) 214,120		(8%)480,720
	3	2,527,740	(20%) 505,540	8,600*30일 266,000	(20%)772,140
			(12%) 303,320		(12%)569,920
			(8%) 202,210		(8%)468,810

◎ 신원인수인의 권리 · 의무

- ▶ 입소인은 신원인수인 1명을 정하여야 한다.
- ▶ 보호자가 신원인수인이 될 수 있다.
- ▶ 신원인수인은 계약에 따른 “보호자 및 대리자”의 일반사항에 대해 알 권리와, “예수마을노인요양원”과 상의하여 입소 생활에 대해 건의 및 요청할 권리가 있다.
- ▶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사망 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의무와 입소비 및 채무를 변상할 의무가 있다.

◎ 계약의 해제

- ▶ 이용자의 해지
가. 이용자와 대리인 및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이를 예수마을노인요양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이때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- ▶ 예수마을노인요양원의 해지
가.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
나.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
다.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예수마을노인요양원은 이용자와 대리인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, 이용자 또는 대리인 및 보호자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□ 기타관련 사항

- ▶ 기타 관련 사항은 예수마을노인요양원 운영규정을 따른다.